

장애인의 접근·이동성을 지원하는 국내법규 평가

An Evaluation of Korean Accessibility Standards Supporting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천진희, 정희란

상명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조교수,
상명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석사

Chun Jin-Hee, Jeung Hoi-ran.

Dept. of Interior Design, Sangmyung Univ.,
Dept. of Interior Design, Sangmyung Univ.

● Keywords: Accessibility, Standards, Disabilities

1. 연구배경 및 목적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¹⁾ 수는 총 105만 3천명으로 인구 100명 당 2.35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장애인 수는 총 5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고령인구 비율이 낮고 장애 범위를 매우 좁게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 장애인들이 등록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장애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환경관련 전문가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거시적 환경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사용자에 생물학적·심리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환경 연구는 소홀히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러 가지 미시적 환경 요인 중 장애물 없이 목적지에 접근하고 이동하는 것은 건물 내부에서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환경에 접목되어야 할 제 요건-접근성²⁾, 적용성, 심미성, 경제성-중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수요건임에 틀림이 없다. 실제로 장애인들은 물리적인 시설들이 그들의 접근성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보행을 막는 거리 장애물을 없애므로써 그들의 신체적 한계를 포용할 수 있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고 디자인적 관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경험, 실험적 연구, 보편 타당한 지침 및 법규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명백하고 납득할만한 원칙과 기준을 제공하며, 영향력이 있는 것은 법규 및 지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8년 4월 11일 발효된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칭한다)을 연구범위로 국한시키고, 현행 법률의 기초가 되었던 장애인복지법의 시행규칙인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비교하여 접근성에 관한 법규와 세부 기준을 조사·분석·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관련 전문가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식견과 정보를 갖게 되며, 더 나아가 건축적, 디자인적 요소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사회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주택이나 그의 건물의 구조가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리·환경적 특성.

법률'의 기본개념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모든 시설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 법은 총 29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주의 의무, 시설주관기관의 설치계획, 시행의무 및 제재 조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위법률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세부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은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함께 환경 및 시설을 공유함에 있어 1차적인 난관이 되었던 접근 및 이동의 방해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대상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의무 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시설주가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양적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의 타당성 여부와 질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 본 법률을 통하여 장애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폭넓게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환경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는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실내구성요소별 세부기준의 비교분석 및 논의

3-1. 개구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구부의 세부기준은 이전의 법률과 비교하여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의 통과 유효폭이 0.9m 이상에서 0.8m 이상으로 개정되어 더 좁아졌으며 문의 손잡이 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0.8m~0.85m에서 현재는 0.8m~0.9m로 그 범위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모든 건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설주의 입장을 배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문의 유효폭에 있어서, 휠체어 사용자가 직진할 때 조작동작의 폭이 최소 0.78m인 점을 감안한다면 0.8m는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극히 적은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연구한 단체 및 연구자들에 의하면 개구부의 통과유효폭은 최소 0.85m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개구부 옆의 활동공간을 과거의 0.3m에서 0.6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개정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배려하려는 노력 또한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할 수 있다'는 권고적 사항에 그치고 있다.

3-2. 복도 및 통로

현행법에서는 복도상부의 유효 높이를 2.1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며 유효폭은 편복도일 경우 1.2m 이상이 되도록 엄격한 기

준을 제시한데 반하여 중복도일 경우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기존의 의무적 사항에서 권고적 사항으로 다소 완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주요한 복도는 유효폭을 1.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과거의 법규도 현재는 삭제된 채 지극히 기본적인 사안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및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모든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동상의 문제를 본 규정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현황에 기초한 기준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현재는 간과되고 있는 복도의 모퉁이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3. 계단 및 경사로

건물내부의 각 층을 연결하는 계단 및 경사로서는 무엇보다도 목발, 지팡이 사용자들의 접근과 이동이 용이하도록 세부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계단에 있어서 현행법은 디딤판의 너비를 0.28m 이상, 첩면의 높이를 0.1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디딤판의 너비를 0.3~0.33m, 첩면의 높이를 0.15~0.165m로 규정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계단을 통한 수직이동이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더 어렵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의 한 연구자료는 장애인을 위한 계단 하나의 높이는 0.16m, 디딤판의 너비는 0.3m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최소의 기준은 시설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한 것으로 일반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한 입법이 아쉬운 실정이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 점은 현행법에서 '계단코의 색상을 바닥재의 색상과 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색채가 고려되어야 함을 제도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서 기존 법에 비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색채에 대한 배려, 즉 명도나 색상 대비 등을 통한 명시도 향상과 같은 색채 계획에 대한 언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사로서 있어서는 1.2m 이상의 유효폭, 12분의 1 이하의 경사로, 연속된 핸드레일, 참의 설치높이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실내요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세부적인 치수에 관해서 언급할 뿐 접근 및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즉, 시각장애인의 동선유도를 위해 핸드레일의 색을 벽과 대조적으로 하거나 안쪽에 건축적 조명을 계획함으로써 동선유도의 기능과 함께 심미적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3-4. 장애인용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현행법에 의하면 2층 이상의 모든 건물에는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우선 승강기에 대한 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승강기 전면에 확보해야 할 유효면적은 과거 1.5m×1.5m에서 1.4m×1.4m 로 완화되었으며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2cm 이하에서 현재 3cm 이하로 규정이 바뀌었다. 그리고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도 폭 1.5m×1.5m 이상이던 것이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이면 가능하게 되었으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에서 0.8m 이상으로,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양측면이 아니라 진입방향 우측면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규정의 완화는 확실히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를 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0.8m 폭의 출입문과 1.1m×1.4m의 승강기 내부의 바닥면적은 휠체어만 간신히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속달된

조작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손등을 긁거나 다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을 3cm까지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가느다란 지팡이가 빠지거나 끼일 우려가 있으며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목발이 사이에 박힐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세부기준에는 0.8m 이상의 유효폭, 수평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 3매 이상의 디딤판, 분당 30m 이내의 속도,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대체로 휠체어 사용자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타 장애인에게도 유용한 것이 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계단과 계단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해주는 수단이 보완되어야 한다. 즉, 수평상태에서 단차가 시작되는 부분에 경고를 위한 조명을 매입하거나 계단코의 색과 재질을 변화시켜 이들의 접근 및 이동을 돕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휠체어리프트의 세부기준은 예전의 법과 비교하여 계단 상부 및 하부 2개소에 설비를 갖추도록 하던 것이 1개소로 줄었으며 1.5m×1.5m의 승강장 면적이 1.4m×1.4m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수직형 휠체어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나 단순히 유효면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주변시설 및 승강장과 승강기의 바닥재질 변화, 운행 중 사용자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추락방지턱과 난간에 대한 세부사항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4. 평가 및 향후 추진 과제

1. 편의증진법의 분석 결과, 이 법은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대상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자를 위한 환경개선의 의지를 보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 그러나 편의시설의 양적확산에 치중한 나머지 과거보다 시설주의 입장이 먼저 고려되었고, 실질적 혜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성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소홀하다.
3. 실내구성요소의 세부기준에 있어 접근성의 기초가 되는 치수에 관해 주로 언급된 반면, 적응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색채 및 질감 등에 관한 법적 장치는 미비하다. 따라서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으로 언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환경창조의 기초가 되도록 한다.
4. 현행 법규가 장애인을 배제한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외 연구단체와 장애인이 참여한 연구자료에 기초하여 법률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5. 향후 과제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규범을 우리보다 일찍 채택하고 기술적인 기초를 마련하였던 선진복지국가들의 장애인복지관련 법률과 규범을 분석·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참고문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1995
- *Chun, Jin-Hee Environmental Adaptations and Preferences of Visually Impaired Individuals, University of Minnesota, 1989,
- *Howel, S., Environmental and Aging,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 Geriatrics, New York Springer, 1980.
- *Weisman, J., Evaluating Architectural Legibility, Environment and Behavior, Vol.13, No.2, March 1981.